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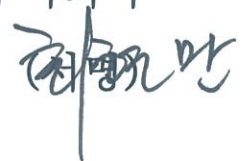
미래에셋대우

2018 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9 년 2 월 27 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다. 관련 규정	6
2. 이사회	7
가. 역할(권한과 책임)	7
나. 구성(이사)	13
다. 활동내역	18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35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7
가. 역할(권한과 책임)	37
나. 구성	37
다. 선임기준.....	38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0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2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70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70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14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114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15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118
바. 사외이사 평가.....	118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2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23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2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30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130
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30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33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36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38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139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140
6. 감사위원회	141
가. 역할(권한과 책무)	141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4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47
라. 감사보조조직 등	154
7. 위험관리위원회	155

가. 역할(권한과 책무)	155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5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60
8. 운영위원회	176
가. 역할(권한과 책무)	176
나. 구성(운영위원회위원)	17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77
9. 사회적책임위원회	184
가. 역할(권한과 책무)	184
나. 구성(사회적책임위원회위원)	18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85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85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85
첨부 1. 미래에셋대우 정관	186
첨부 2.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221
첨부 3.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규정.....	237
첨부 4.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45
첨부 5.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규정.....	248
첨부 6. 미래에셋대우 위험관리규정.....	255

첨부 7.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 규정.....	271
첨부 8. 미래에셋대우 운영위원회 규정.....	274
첨부 9. 미래에셋대우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278
첨부 10. 미래에셋대우 내부통제기준.....	281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원칙]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책]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 역할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적법성·공정성·사업성 등을 확보하도록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8 년말 현재 이사회 57%가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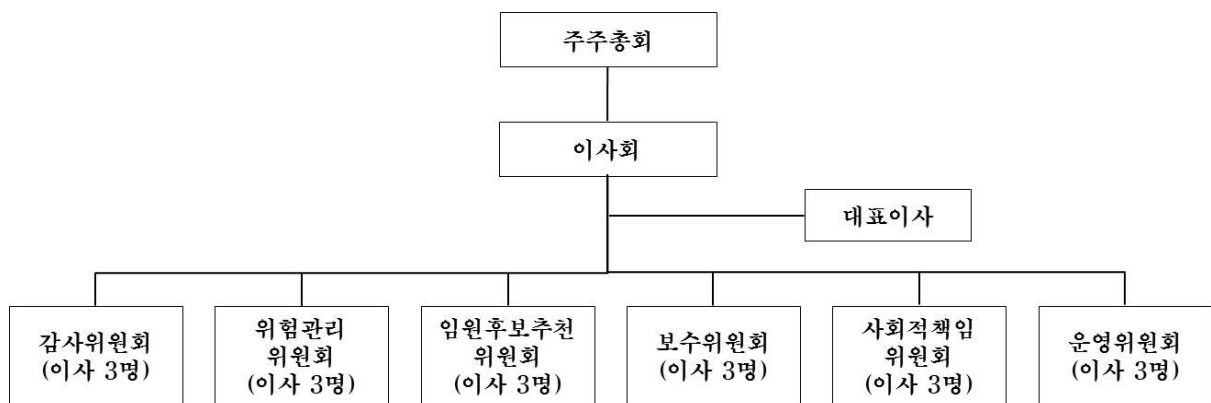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8 년말 현재 금융분야 4 명, 경영분야 1 명, 행정분야 1 명, 재무 · 세무분야 1 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축을 통해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 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분 ·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i)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성 · 역할 · 활동내역, ii) 이사의 독립성 · 전문성, iii) 감사제도, iv) 임원의 보수, v)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사경영의 투명성 · 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공시함으로써 감독당국이나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총 7명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인으로서 상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써 금융분야 4명, 경영분야 1명, 행정분야 1명, 재무·세무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하

여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금융투자협회,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임기한에 대한 제한(총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회적책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감사위원회의 경우 2/3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위원회의 대표는 각 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주요 경영사항 및 업무집행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상법” 및 “정관”에 의해 설치한 운영위원회의 내부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판단의 적정성, 적법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절차에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경영 및 동반성장 역할 기대에 부응하고자 사회공헌 및 기업사회책임 활동의 전략을 수립하는 사회적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 구성원)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이사회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해 심의 및 의결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4/7	황건호 (사외이사)	정관, 이사회규정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후보 추천	2/3	박찬수 (사외이사)	정관, 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구축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집행	3/3	김병일 (사외이사)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보상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3	황건호 (사외이사)	정관, 보수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	2/3	권태균 (사외이사)	정관, 위험관리규정

	한과 책임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운영위원회	회사 제반 업무 집행 및 주요 경영사항으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0/3	최현만 (대표이사)	정관, 운영위원회규정
사회적책임 위원회	기부,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 기업사회책임 활동에 대한 심의·의결	2/3	최현만 (대표이사)	사회적책임위원회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미래에셋대우 정관
- 첨부 2.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3.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규정
- 첨부 4.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미래에셋대우 위험관리규정
- 첨부 7.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 8. 미래에셋대우 운영위원회규정
- 첨부 9. 미래에셋대우 사회적책임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6).

2019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해 경영진 및 사외이사 의견을 수렴하여, '19년 1월 개최된 제 51기 제 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19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확정하였습니다.

핵심전략	추진 과제
Global	Global 비즈니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법인 IB 비즈니스 혁신 - 해외법인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적시성 제고 - 이머징국가 內 종합증권사 위상 강화 -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고객계좌의 재구성」 지속 추진 - 전사 수익구조 Global 化
Investment	투자·운용 주도 성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 - 운용전략 다변화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 및 손익 안정성 제고
Digitalization	Fintech 혁신을 통한 Digitalization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Fintech 런칭 - 증권업 최초 모바일 브랜치 도입 - 디지털 고객기반 확대
Pension	연금(Pension) 기반 WM비즈니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DF 중심 연금 수익률 안정성 제고 - 연금 채널혁신을 통한 WM 영업력 확대 - 연금 비대면고객 확대 및 인프라 혁신

이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해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진행 경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정관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이사회결의사항 1. 나. 1)).

공시 대상 기간 중 해당 안건은 부의된 바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연간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편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7)이에 따라 '19 년 예산은 '19 년 1 월 개최된 제 51 기 제 1 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7 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18 년 1 월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18 년 3 월 제 50 기 제 4 차 이사회에 '17 년 결산안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최종 제출된 '17 년 결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FY2017 별도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57,417,286	영업수익	9,464,806
부채총계	50,010,443	영업이익	553,219
자본금	3,4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54,286
자본총계	7,406,843	당기순이익	424,428

○ FY2017 연결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90,626,599	영업수익	10,298,650
부채총계	83,242,093	영업이익	627,753
자본금	3,4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64,749
자본총계	7,384,506	당기순이익	504,934

○ 이익배당

- 보통주 : 1주당 220원(시가배당율 : 2.5%)
- 우선주 : 1주당 242원(시가배당율 : 4.0%)

'18 년 3 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결산안(배당 포함)이 승인되었으며, 현금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이사회결의사항 1. 나. 4)).

공시 대상 기간 중 해당 안건은 부의된 바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5. 나.).

정관 제 38 조의 2 제 1 항, 이사회규정 제 12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위험관리규정을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는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최종 의결합니다.

바) 경영승계업무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영승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미래에셋대우는 상법 제 397 조의 2 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50 기 제 7 차, 제 9 차, 제 16 차 이사회에 부의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안)” 및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은 거래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또는 용역 거래(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 50 기 제 2 차, 제 5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제 11 차, 제 12 차, 제 14 차, 제 15 차, 제 16 차, 제 17 차 이사회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기타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이사)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이사회규정 § 4),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정관 § 31),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더불어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의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 보고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3 항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18 년말 현재 사외이사는 금융분야 1 명, 경영분야 1 명, 행정분야 1 명, 재무·세무분야 1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분야 전문가인 사내이사 3 인을 포함하여 총 7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인 황건호 이사가 이사 전원의 동의로 '18 년 3 월 제 50 기 제 7 차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 정책을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의장 황건호

황건호 이사는 2016년 3월 25일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선임되어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건호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초빙교수<'1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07~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2~'1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09>,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99~'03>, 대우증권(주) 부사장<'96~'99> 등

② 사내이사 최현만

최현만 이사는 2016년 11월 4일 이사로 최초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8기 제 16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최현만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6~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15~현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07~현재>, 미래에셋생명(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2~'16>,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99~'12>,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97~'99> 등.

③ 사내이사 조용기

조용기 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이사로 최초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9기 제 3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부회장<'17~>,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10~'16>, 하나은행<'98~'99>, 보람은행<'91~'98> 등.

④ 사내이사 김상태

김상태 이사는 2018 년 3 월 27 일 이사로 최초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사장 직위로 IB 부문 총괄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IB 부문 총괄<'18~>, IB 사업부문 대표<'14~'18>,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상무<'10~'13>, 메리츠종합금융 IB 사업본부장<'07~'10>, 미래에셋대우<'89~'07> 등.

⑤ 사외이사 김병일

김병일 이사는 2016 년 2 월 5 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선임 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07~>,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15~'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4~'15>,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08~'09>, (주)대현 상임감사<'99~'07>, 재정경제원 서기관<'95~'99> 등.

⑥ 사외이사 권태균

권태균 이사는 2017 년 3 월 24 일 사외이사로 최초선임되어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태균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15~>, 삼성전기 사외이사<'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위원<'13~'14>,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10~'13>, 조달청장 <'09~'10>,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08~'09>, 재정경제부<'05~'08> 등.

⑦ 사외이사 박찬수

박찬수 이사는 2018 년 3 월 27 일 사외이사로 최초선임되어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수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스톤 대표<'13~>, 대신증권 사외이사<'13~'18>,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09~'12>, 금융감독원<'99~'09> 등.

(3) 요약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황건호	사외	이사회 의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1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 교수<'07~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12~'1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4~'09>, 메리츠증권 (주) 대표이사(사	16.3.25	19.3.26	34 개월	보수위 위험위 감사위

			장) <'99~'03>, 대우증권 (주) 부사장<'96~'99>				
최현만	상임	운영위원회 위원장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 사 수석부회장<'16~현재 >, 미래에셋벤처투자 기 타비상무이사(비상 근) <'15~현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 근) <'07~현재>, 미래에 셋생명(주) 대표이사 수석 부회장<'12~'16>, 미래 에셋증권(주) 대표이사 <'99~'12>, 미래에셋자 산운용 대표이사 <'97~'99>	16.11.4	19.3.26	26 개월	운영위 보수위
김상태	상임	-	미래에셋대우(주) IB 부문 총괄<'18~>, IB 사업부 문 대표<'14~'18>, 유진 투자증권기업금융총괄 상무<'10~'13>, 메리츠 종합금융 IB 사업본부장 <'07~'10>, 미래에셋대 우<'89~'07>	18.3.27	19.3.26	10 개월	임추위 운영위
조웅기	상임	-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 사 부회장<'17~>, 미래 에셋증권(주) 대표이사 사 장<'10~'16>, 하나은행 <'98~'99>, 보람은행 <'91~'98>	17.3.24	19.3.26	22 개월	위험위 운영위
김병일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 과 전공교수<'07~>, 현 대커머셜(주) 사외이사 <'15~'18>,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위 원<'14~'15>, 금융위원 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08~'09>, (주)대현 상임감사<'99~'07>, 재 정경제원 서기관 <'95~'99>	16.2.5	19.3.26	35 개월	감사위 보수위
권태균	사외	위험관리위원 회 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17.3.24	19.3.26	22 개월	임추위 위험위

			<15~>, 삼성전기 사외이사<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13~'14>,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10~'13>, 조달청장<09~'10>,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08~'09>, 재정경제부<05~'08>				
박찬수	사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파인스톤 대표<13~>, 대신증권 사외이사<13~'18>,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09~'12>, 금융감독원<99~'09>	18.3.27	19.3.26	10 개월	임추위 감사위

※ 재임기간은 2018년 12월 기준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8년에는 총 17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평균 참석률이 98%였던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통해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진이 안전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8년 중에 개최된 이사회 의 보고 및 의결안건이 수정의결이나 보류사항 등 특이사항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50기 제1차 이사회 : 2018년 1월 4일(오전 8시)

[안전통지일 : 2017년 12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유상증자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50기 제 2차 이사회 : 2018년 1월 31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1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위험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제49기 결산배당(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홍콩, 인도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감사결과 보고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신탁 63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제 1 항(동시행령 제 17 조의 8)
 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다) 제50기 제3차 이사회 : 2018년 2월 23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2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해외법인 지배구조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내역 보고								
2호 안건 : 2017년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3호 안건 : 2017년 재산상이익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4호 안건 :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5호 안건 : 2017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라) 제50기 제4차 이사회 : 2018년 3월 6일(오전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2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2호 안건 : 제49기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호 안건 : 제49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마) 제50기 제5차 이사회 : 2018년 3월 20일(오전 9시)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미래에셋캐피탈 글로벌유니콘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약정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바) 제50기 제6차 이사회 : 2018년 3월 27일(오전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권태균 사외이사, 김상태 사내이사 2018년 3월 27일자로 신규 선임

※ 홍성일 사외이사, 김국용 사내이사 임기 만료

사) 제50기 제7차 이사회 : 2018년 3월 27일(오전 11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이사회 의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대표이사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사내이사 처우(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뉴욕법인 지분 현물 출자를 통한 미국 지주회사 설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미래에셋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약정과 “Mirae Asset Naver Asia Growth Fund”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운용]에 출자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기투자한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자산운용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 중 일부를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아) 제50기 제8차 이사회 : 2018년 4월 18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8년 4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세컨더리 투자조합18-1호”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변경 및 투자보수 변경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자) 제50기 제9차 이사회 : 2018년 5월 2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4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용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용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미래에셋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의 출자약정과 관련하여 2018년 7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출자구조를 변경하고자,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차) 제50기 제10차 이사회 : 2018년 5월 25일(오후 5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5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용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용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중, 장기 배당정책(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인디아프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설정 예정인 “멀티에셋 Scale-up Mezzanin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를 조건부 출자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뉴욕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Mirae Asset Global LongShort Fund”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카) 제50기 제11차 이사회 : 2018년 6월 28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6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보수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홍콩법인 보유 LA법인 지분 현물출자를 통한 미국 내 지배구조 개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2018년 공모 주식워런트증권 발행한도 증액의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관련 대표회사 업무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총액인수 투자 금액 중 당사의 인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Equity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타) 제50기 제12차 이사회 : 2018년 7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18년 7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관련 사규 재,개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협의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기 투자중인 “신한 BNPP 미국 Frontera 가스발전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파) 제50기 제13차 이사회 : 2018년 8월 30일(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8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50기 제14차 이사회 : 2018년 9월 17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9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 코어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큐리어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조건부 출자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사모부동산투자신탁27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에 추가 출자 약정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가) 제50기 제15차 이사회 : 2018년 10월 25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10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사회적책임위원회 설치 및 소속 위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 1) 기 투자중인 “NH-Amundi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5호”의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부동산 투자목적회사 “MAPS Location(Singapore) Pte. Ltd.”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2018년 9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멀티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나) 제50기 제16차 이사회 : 2018년 11월 29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8년 11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사내이사 처우(案)	찬성	의결권 없음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2019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 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 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기 투자중인 “코웨이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 62호”에 PF 대출 금융자문 및 총액인수 확약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ELS셀렉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다) 제50기 제17차 이사회 : 2018년 12월 20일(오후 2시)

[안건통지일 : 2018년 12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9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0호 안건 :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변경 보고								
2호 안건 : 미래에셋그룹 현황 보고								
3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4호 안건 : 2018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5호 안건 : 201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6호 안건 :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주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기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중 일부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2호, 1-3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본 평가는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정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제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지난 2018 사업연도 동안 총 17 차례 개최되었고, 모든 이사가 100%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이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언 및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고, 안건에 대한 자료 설명이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이사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일전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항목은 기본역할(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점검은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2017년 제 3차 이사회(2017.03.24)에서 황건호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황건호 사외이사는 2018년 제 7차 이사회(2018.03.27)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의거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4 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1)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2) 금융회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추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3)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고, 상시적으로 후보군을 탐색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총 1 회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 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임원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2018 년 3 월 제 7 차 이사회에서 기존 권태균 사외이사에서 박찬수 사외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12.31.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 비상임	現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박찬수	사외	사외이사	'18.3.27 ~ '19.3.27	-
권태균	사외	사외이사	'17.3.24 ~ '19.3.27	'18 년 3 월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18 년 3 월 황건호, 김병일, 박찬수 감사위원 후보 추천 '18 년 3 월 최현만, 조응기 대표이사 후보 추천
김상태	상임	사내이사	'18.3.27 ~ '19.3.27	-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통해 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년 8 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법률상 요구하는 요건 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추가하여 임원 후보 추천시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본 규범에서 이사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비상임이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의 재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원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

였습니다. 또한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후보 추천 내역 전반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사규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장기간 금융·행정·법률·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 인력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후보군은 관련 법령 및 당사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검증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충분한 시간의 검증기간을 통해 최종 의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 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 회 개최되었으며, 의결안건 3 개 모두 가결되어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각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의결되었습니다.

2018 년말 현재 사외이사·감사위원·대표이사 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50기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8년 3월 6일(오전 10시)

[안전통지일 : 2018년 2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권태균	황건호	김국용	
1. 이사 성명	권태균	황건호	김국용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²⁾	찬성	의결권 없음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중 권태균, 황건호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2)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황건호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3) 평가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운영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최현만
- (2) 출생연도 : 1961년 8월 18일
- (3) 출신학교 : 광주고등학교(1980년)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1990년)
- (4) 경력

'89년~'97년 동원증권 지점장 '97년~'99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99년~'12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12년~'16년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07 ~ (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5 ~ (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6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황건호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 이사회 의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건호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최현만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후보자 최현만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27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주요 금융계열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중요한 시기에 회사의 경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당사는 수시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회사의 양적 성장 및 합병에 따른 유기적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대내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책임자를 물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기의 추천사유를 이유로 2018년 3월 6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 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최현만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

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8 년 3 월 선임된 최현만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 년 3 월 6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현만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 명 중 3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조용기
- (2) 출생연도 : 1964 년 2 월 12 일
- (3) 출신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1982 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1991 년)
- (4) 경력

'91 년~'98 년 보람은행
 '98 년~'99 년 하나은행
 '01 년~'02 년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업본부 부장
 '02 년~'05 년 미래에셋증권 CW 본부장
 '05 년~'06 년 미래에셋증권 IB 본부장
 '06 년~'09 년 미래에셋증권 법인 CM 사업부 대표
 '09 년~'10 년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사업부 사장
 '10 년~'16 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17 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황건호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 이사회 의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건호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조용기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후보자 조용기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조용기 후보자는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 서 근무하였습니다. 합병 전 미래에셋증권(주)에서는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미래에셋대우(주) 합병법인 출범으로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1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중요한 시기에 회사의 경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당사는 수시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회사의 양적 성장 및 합병에 따른 유기적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대내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적임자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기의 추천사유를 이유로 2018년 3월 6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조웅기 후보자는 다년간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8 년 3 월 선임된 조웅기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6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용기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김병일
- (2) 출생연도 : 1955년 9월 22일
- (3) 출신학교 :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1974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198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86년)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1994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2002년)
- (4) 경력

'84년~'87년 총무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87년~'94년 재무부 행정사무관
'95년~'99년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99년~'07년 (주)대현 상임감사
'14년~'15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5년~'18년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07년~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16년~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황건호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 이사회 의장

-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김병일 사외이사는 2016 년 2 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후보자 김병일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15 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으며 법학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행정, 법률 전문가이며, 현재는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입법,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2016 년 2 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투명한 감사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8 년 3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2007 년부터 현재까지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07 년 ~ 현재)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15 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으며 법학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행정, 법률 전문가이며, 현재는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입법,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8 년 3 월 감사위원 재선임시 선임된 김병일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병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8 년 3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 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 명 중 3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황건호
- (2) 출생연도 : 1951 년 1 월 23 일
- (3) 출신학교 : 용산고등학교(1969 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74 년)

Rutgers 대학원 경제학 석사(1989 년)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97 년)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2001 년)

(4) 경력

'76 년~'99 년 대우증권 부사장

'99 년~'03 년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

'04 년~'09 년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 년~'12 년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회장

'12 년~'14 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07 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15 년~현재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16 년~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권태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권태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2016 년 3 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권태균 사외이사와 후보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2016 년 3 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8 년 3 월 제 1 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8 년 3 월 감사위원 재선임시 선임된 황건호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황건호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8 년 3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2 명 중 2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황건호 사외이사는 안건의 이해 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후보자 3]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박찬수

(2) 출생연도 : 1955년 7월 21일

(3) 출신학교 : 광주고등학교(1975년)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198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1987년)

(4) 경력

'82년~'99년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99년~'09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조사 1국 국장/부원장보

'09년~'12년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13년~'18년 대신증권 사외이사

'13년~현재 파인스톤 대표

'18년~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황건호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 이사회 의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의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후보자 박찬수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한 금융업, 감사 전문가입니다.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1982 년부터 2009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금융감독원 '82년 ~ '09년)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한 금융업, 감사 전문가입니다.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18년 3월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된 박찬수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박찬수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18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연도	출신학교	주요 경력	사외이사 경력 (2017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황건호	'51.1.23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Rutgers 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	'76~'99 대우증권 부사장 '99~'03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04~'09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09~'12 한국금융투자협회장 '12~'14 서울대 경영학 초빙교수 '07~현재 이화여대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15~현재 서강대 경영학 초빙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6. 3 ~ (이사회 14회 중 100% 참석, 위원회 13회 중 85% 참석)
김병일	'55.9.22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과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84~'87 총무처, 국세청 행정사무관 '87~'94 재무부 행정사무관 '95~'99 재정경제원(부)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99~'07 (주)대현 상임감사 '14~'15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5~'18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07~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16~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6. 2 ~ (이사회 14회 중 93% 참석, 위원회 12회 중 100% 참석)

권태균	'55.11.28	경기도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버지니아대학 경영학 MBA 중앙대학교 국제대학 원 국제학 박사	'05~'08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경제자 유구역기획단장 '08~'09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09~'10 조달청장 '10~'13 주아랍에미리트(UAE) 대 사 '14~현재 삼성전기(주) 사외이사 '15~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 '17~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17. 3 ~ (이사회 12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5 회 중 100% 참석)
박찬수	'55.7.21	광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경제학 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원 재무론 석사	'82~'99 증권감독원/금융감독원 '99~'09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 조사 1 국 국장, 부원장보 '09~'12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 원 '13~'18 대신증권 사외이사 '13~현재 파인스톤 대표 '18~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황건호 사외이사가 후보제안하였으며, 황건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권태균 사외이사가 후보제안하였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및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2018 년 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하였으며, 상기 후보자들 중 재선임 후보자인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황건호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는 각각 후보제안한 사외이사와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황건호 후보자]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서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7 년 이사회 100% 참석, 위원회 85%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8 년 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김병일 후보자]

후보자는 15 여년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였으며 법학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행정, 법률 전문가이며, 현재는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입법, 행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7 년 이사회 93% 참석,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8 년 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권태균 후보자]

후보자는 수년간 재정경제부 및 지식경제부에 재직하였고, 조달청장 및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유관기관에서의 행정경력 및 Global 업무감각은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7 년 이사회 및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8 년 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박찬수 후보자]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한 금융업, 감사 전문가입니다.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2018 년 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당사는 금융·행정·법률·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 인력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4명의 사외이사는 3명의 기존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1명의 신규 사외이사의 선임 건입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다양한 분야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건호 후보자는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투자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김병일 후보자는 재정경제원 서기관으로 근무하였고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등 행정·세무분야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권태균 후보자는 수년간 재정경제부 및 지식경제부에 재직하였고, 조달청장 및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역임하면서, 관련 행정업무의 최고의 전문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박찬수 후보자는 20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상근감사위원회, 사외이사를 역임한 금융업, 감사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 직무공정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을 자격요건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제 10 조 임원의 겸직제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5 년간의 징계내역을 확인하여 증빙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윤리성·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라) 충실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충실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본인 소명

당사는 '18년 3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징계내역 및 재직증빙 서류,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및 박찬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신규선임을 위해 '18년 3월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상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인 권태균, 황건호 사외

이사는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8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 중 3명의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 사규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며, 사외이사 재직 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참석률 등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의 충실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재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시 반영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직전사업연도 이사회 등 참석률	평가 여부
황건호	1년 10개월	○	93%	○
김병일	1년 11개월	○	96%	○
권태균	10개월	○	100%	○
홍성일	1년 1개월	X	100%	○

※ 재임기간은 2017년말 기준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내부규범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에 추가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자 하며, 그 후보군에 대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주 및 임원 등 내외부의 경로를 통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1) 제50기 제1차 이사회 : 2018년 1월 4일(오전 8시)

[안건통지일 : 2017년 12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유상증자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제 50기 제 2 차 이사회 : 2018 년 1 월 31 일(오전 8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18년 1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위험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제4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제49기 결산배당(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홍콩, 인도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감사결과 보고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63 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제 1 항(동시행령 제 17 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3) 제50기 제3차 이사회 : 2018년 2월 23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2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해외법인 지배구조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내역 보고					
2호 안건 : 2017년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3호 안건 : 2017년 재산상이익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4호 안건 : 2017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5호 안건 : 2017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4) 제50기 제4차 이사회 : 2018년 3월 6일(오전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2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2호 안건 : 제49기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호 안건 : 제49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5) 제50기 제5차 이사회 : 2018년 3월 20일(오전 9시)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홍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미래에셋캐피탈 글로벌유니콘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약정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6) 제50기 제6차 이사회 : 2018년 3월 27일(오전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권태균 사외이사, 김상태 사내이사 2018년 3월 27일자로 신규 선임

※ 홍성일 사외이사, 김국용 사내이사 임기 만료

(7) 제50기 제7차 이사회 : 2018년 3월 27일(오전 11시 2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3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이사회 의장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대표이사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사내이사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뉴욕법인 지분 현물 출자를 통한 미국 지주회사 설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미래에셋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약정과 “Mirae Asset Naver Asia Growth Fund”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운용]에 출자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3) 기투자한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자산운용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 중 일부를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 매도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4)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사업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8) 제50기 제8차 이사회 : 2018년 4월 18일(오후 4시)

[안건통지일 : 2018년 4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세컨더리 투자조합18-1호”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변경 및 투자보수 변경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9) 제50기 제9차 이사회 : 2018년 5월 2일(오후 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4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미래에셋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운용]의 출자약정과 관련하여 2018년 7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내용 중 출자구조를 변경하고자,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이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Debt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0) 제50기 제10차 이사회 : 2018년 5월 25일(오후 5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5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중, 장기 배당정책(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인디아프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설정 예정인 “멀티에셋 Scale-up Mezzanin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를 조건부 출자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뉴욕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Mirae Asset Global LongShort Fund”를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1) 제50기 제11차 이사회 : 2018년 6월 28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5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직위자 등에 대한 보수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홍콩법인 보유 LA법인 지분 현물출자를 통한 미국 내 지배구조 개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2018년 공모 주식워런트증권 발행한도 증액의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관련 대표회사 업무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랩스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총액인수 투자 금액 중 당사의 인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 Global Private Equity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2) 제50기 제12차 이사회 : 2018년 7월 27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18년 7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관련 사규 재,개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협의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기 투자중인 “신한 BNPP 미국 Frontera 가스발전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3) 제50기 제13차 이사회 : 2018년 8월 30일(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8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4) 제50기 제14차 이사회 : 2018년 9월 17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9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 코어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큐리어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조건부 출자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 프런티어 사모부동산투자신탁27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에 추가 출자 약정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5) 제50기 제15차 이사회 : 2018년 10월 25일(오전 8시 30분)

[안건통지일 : 2018년 10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사회적책임위원회 설치 및 소속 위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 1) 기 투자중인 “NH-Amundi 글로벌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5호”의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부동산 투자목적회사 “MAPS Location(Singapore) Pte. Ltd.”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2018년 9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멀티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6) 제50기 제16차 이사회 : 2018년 11월 29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18년 11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사내이사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2019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 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 한도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기 투자중인 “코웨이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 62호”에 PF 대출 금융자문 및 총액인수 확약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ELS셀렉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17) 제50기 제17차 이사회 : 2018년 12월 20일(오후 2시)

[안건통지일 : 2018년 12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권태균	박찬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1호 안건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호 안건 :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호 안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호 안건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7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9호 안건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0호 안건 : 2019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계획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1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 변경 보고					
2호 안건 : 미래에셋그룹 현황 보고					
3호 안건 : 그룹위험관리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4호 안건 : 2018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5호 안건 : 201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6호 안건 :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주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기투자자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4호” 중 일부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2호, 1-3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일호투자회사”,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승인함.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 50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8 년 3 월 6 일(오전 10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2월 2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권태균	황건호	김국용	
1. 이사 성명	권태균	황건호	김국용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호 안건 :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 안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의결권 없음 ²⁾	찬성	가결
다. 3호 안건 :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권태균, 황건호 사외이사는 안건 중 본인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의결 미실시함.

2)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황건호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다) 감사위원회

- 제 50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18.1.31 오전 10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18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2017년 감사결과 보고

○ 2017년 하반기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제 50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18.2.23 오후 4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심의안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案)

－ 제 50 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 2018.3.6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FY2017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FY20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4호안건 FY2017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제49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제 49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 50 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18.3.27 오전 10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3.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²⁾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案)	- ¹⁾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김병일 위원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불가
- 2) 제49기 정기주주총회(2018.3.27)에서 홍성일 감사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박찬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제 50 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18.4.18 오후 4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4.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18.6.28 오전 11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6.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7 차 감사위원회 : 2018.7.27 오전 9 시 4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7.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불참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18.7.27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7.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제 50 기 반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제 50 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18.9.17 오전 9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9.14]

1) 보고안건

- 내부회계제도 감사위원회 보고

– 제 50 기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18.11.29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1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11 차 감사위원회 : 2018.12.20 오전 11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18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1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 제 50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1.04 오전 9 시

[안전 통지일 : 2018.01.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8 년 1 분기 위험액 (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등 총 1 건 보고
- 2) 2018 년 1 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3) CRO 승인에 의한 전용 내용 반영 및 대고객 신용공여한도 관리 내용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5)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제 50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1.31 오전 8 시

[안전 통지일 : 2018.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²⁾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심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 빌딩 총액인수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기상황 분석 결과, 종합위기관리체계 점검 결과,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등 총 3 건 보고
- 2) 가치평가소위원회 및 금융상품소위원회 설치, 운영리스크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주문한도의 관리 일관성 확보, 채권유니버스 적용 업무 및 개정시기 명확화 등을 위한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
- 3) 시장성투자의 자기자본투자 승인기준 신설
- 4)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빌딩 총액인수 관련 부동산펀드수익증권 매입 및 일부 수익증권의 만기 보유

– 제 50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2.23 오후 4 시 30 분
 [긴급사유 발생으로 위원장이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소집]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 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을 위한 LOC 제출의 건

－ 제 50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06 오전 09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03.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SK E&S 유상증자 TRS 기초유 동화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기업금융자산 확대에 따른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변경
- 2)SK E&S 유상증자 TRS 기초 유동화 거래로 인해 (주)SK 향 동일 거래상대
방 투자한도를 일부 초과하게 되어 한도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위함

– 제 50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16 오전 09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03.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1)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 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조건 변경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조건 변경으로 인한 LOC 한도 증액

- 제 50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27 오전 10 시 40 분

[안건 통지일 : 2018.03.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8 년 2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스펀 드(가칭) 투자(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빌딩 총액인수 조건 변경의 건 등 총 3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2017 년 4 분기 결산 결과 반영하여, 자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4)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신용공여 기준(무등급) 상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펀드(가칭)’ 투자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4.20 오전 8 시

[안전 통지일 : 2018.04.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¹⁾ 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쓰 펀드 투자 출자구조 변경의 건 (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³⁾ 홍콩 'The Center' Acquisition Financing 투자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기업신용공여 한도 관리대상 중 매입대출채권(사모사채포함) 제외
- 2)제 50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쓰 펀드' 투자 출자구조(출자대상법인 및 관리보수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3)홍콩 "The Center"빌딩 매입을 위한 Deferrable Senior Secured Tr.A Note 매입 및 일부 만기 보유

- 제 50 기 제 8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5.02 오후 4 시

[안전 통지일 : 2018.04.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¹⁾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심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해외투자거래 증가에 따른 해당 부문의 전문 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선임
- 2) 투자자 수요 증대 및 글로벌 IB 와의 경쟁력 제고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특정 등급 이하 지분 및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및 신용공여 승인 기구 투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 제 50 기 제 9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5.23 오전 10 시

[안전 통지일 : 2018.05.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미래에셋 Global Long Short Fund 투자의견(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2018 년 1 분기 결산 결과(우선주 유상증자 등) 반영하여 신용공여 한도 변경
- 2)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시장성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Mirae Asset Global Long Short Fund’ 투자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6.15 오전 10 시

[안전 통지일 : 2018.06.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신용공여 기준(무등급)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 매각 입찰 참여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1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6.28 오전 11 시

[안전 통지일 : 2018.06.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²⁾ 2018 년 3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 조건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1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제 50 기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 의 조건(입찰가격)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제 50 기 제 1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8.30 오후 02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08.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²⁾ 동일거래상대방 신용 한도 신설 및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블라인드 PEF LP 투자한도 신설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위기상황 분석결과 등 총 2 건 보고
- 2) 트레이딩 및 자금운용 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편중위험 관리를 위한 동일거래상대방 신용한도 신설 및 변경
- 3) 회수기간이 길며 투자검토 요소가 제한적인 Blind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 위험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 필요

– 제 50 기 1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9.14 오전 8 시 50 분

[안전 통지일 : 2018.09.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¹⁾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 승인 의 건(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2018 년 4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관련 기준 중순위 채권 투자와 함께 자산 취득을 위한 Equity 인수 및 CTL 을 통한 매각 진행
- 2)채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제 50 기 제 1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0.19 오전 10 시

[안전 통지일 : 2018.10.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¹⁾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_조건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Blind PEF LP 투자한도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제 50 기 제 13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 건의 조건(Equity 인수금액) 변경에 따른 재심의 요청
- 2) IB 부문 영업지원 및 Blind PEF LP 투자 증가에 따른 총 한도 변경 필요

－ 제 50 기 제 1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1.29 오후 2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11.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판교 알파돔시티 6-1 블록 및 6-2 블록 개발사업 PF LOC 제출(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동일 거래상대방 신용한도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 PF 관련 총액인수 확약 LOC 제출
- 2) 3 대 시중은행 전사 한도 변경

- 제 50 기 제 1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2.20 오후 3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건 ²⁾ 쌍용양회 리파이낸싱 최대 1.4 조 원 LOC 발급 및 참여(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1 건 보고
- 2) 쌍용양회 리파이낸싱 관련 최대 1.4 조원 LOC 제출 및 대출 참여
- 3) 조직변경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 4) 조직변경에 따른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마) 보수위원회

- 제 50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1 월 31 일(수) (오전 8 시)

[안건 통지일 : 2018 년 1 월 26 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황건호	김병일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2017 년 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3 월 6 일(화) (오전 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8 년 2 월 28 일(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황건호	김병일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6 월 28 일(목) (오전 10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 년 5 월 22 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2018 년 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4 차 보수위원회 : 2018 년 8 월 30 일(목) (오후 3 시)

[안전 통지일 : 2018 년 8 월 24 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사내이사 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가결

바) 운영위원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황건호

황건호 사외이사는 '18 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 회 중 17 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1 회, 보수위원회 4 회, 위험관리위원회 11 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는 10 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황건호 사외이사는 제 2 차 이사회 의결 5 호 “홍콩, 인도 현지법인 증자(안)”에 대해 해외사업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이머징 국가 진출 시에는 현지 법규 및 인력 등에 대한 리스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냈고, 또한 제 13 차 이사회 의결 1 호 “무보증사채 발행(안)”에 대해 단기와 장기 차입금 등 채무구조 다변화를 통해 유동성 비율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는 등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 년 중 총 86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김병일

김병일 사외이사는 '18 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 회 중 17 회, 감사위원회 11 회, 보수위원회 4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김병일 사외이사는 제 12 차 이사회 의결 4 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안)”에 대해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며,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법성, 적정성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64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권태균

권태균 사외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17 회 중 17 회, 위험관리위원회 16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권태균 사외이사는 제 2 차 이사회 의결 4 호 “제 49 기 결산배당(안)”에 대해 주주친화 정책에 대해 강조하며, 배당뿐 아니라 IR 등 시장과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안전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68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찬수

박찬수 사외이사는 '18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 회 중 12 회, 감사위원회 8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박찬수 사외이사는 제 8 차 이사회 의결 1 호 “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 주식 이익소각도 주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자기자본의 적극적 영업 활용을 통해 주가 상승, 배당 등 장기적인 주주 가치 향상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안전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년 중 총 40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홍성일

홍성일 사외이사는 ‘18 년 중 개최된 이사회 5 회 중 5 회, 감사위원회 3 회, 위험관리위원회 5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홍성일 사외이사는 제 1 차 이사회 의결 2 호 “2018 년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안)”에 대해 연금 비즈니스에 대해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의 노후자금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내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이사회 안전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18 년 중 총 26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개 최	참 여	비 고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운영위원회			실적
황건호	17	17		11	10		11	11		4	4		1	1					86 시간
김병일	17	17		11	11					4	4								64 시간
권태균	17	17					16	16					1	1					68 시간
박찬수	12	12		8	8														40 시간
홍성일	5	5		3	3		5	5											26 시간

※ 2018 년 10 월 제 15 차 이사회에서 설치된 사회적책임위원회는 현재(2018 년 12 월말) 기준 개최 내역 없음.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피보험자 :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 500억 (건당, 연간)
- 보험료 : 194,0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 없음
- 가입기간 : 2017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29일

- 피보험자 :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 500억 (건당, 연간)
- 보험료 : 190,0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 없음
- 가입기간 : 2018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29일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의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로 내규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사외이사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교육일시	교육주체	교육내용
2018년 1월 4일	내부교육	2018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8년 8월 30일	내부교육	미래에셋대우 인사 체계
2018년 11월 14일	내부교육	이사회의 역할과 법적 책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황건호

가) 소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황건호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성을 갖춘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2) 사외이사 김병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병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병일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3) 사외이사 권태균

가) 소극적 자격요건

권태균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권태균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행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나. 직무공정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4) 사외이사 박찬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박찬수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박찬수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금융분야 전문성을 갖춘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13조 및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과 재선임 결정 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이사회에서는 금년 중에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하여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매년 초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과 선임 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년 초에 실시한 2018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 등의 내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 회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에 의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참여도 평가(40%), 자기 평가(40%), 사외이사 간 평가(20%)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의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기본역할(주주 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
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자기 평가 및 사외이사 간 평가
는 사외이사별로 작성한 평가서를 통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19 년초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3 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
원회 참석률 100%, 1 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98%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투명성 제
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모든 사
외이사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 이사	평가결과							개선 방안
	충실성 (참석률)	기본 역할	활동평가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 책임성	공정성	기타	
황건호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김병일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권태균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박찬수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3) 외부평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외부평가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13조 제 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가) 외부평가 개요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미래에셋대우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 내역

-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인원 구성 : 담당임원 2명, 팀장 1명, 팀원 13명
- 담당업무

: 이사회 및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구비 및 관리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검증 등 관리업무 지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등 제반 실무지원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및 사외이사 연수 실시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황건호

가) 재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1,80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60,000,000	월 500 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11,80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건강검진비(배우자) 150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500,000	건강검진비(본인) 150 만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김병일

가) 재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6,30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8,30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30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홍성일

가) 재직기간 : 2018. 1. 1 ~ 2018. 3. 2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5,928,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1,6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4,328,100	회의참석수당 (50/300)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권태균

가) 재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9,300,000	
기본급	48,0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11,30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5) 사외이사 박찬수

가) 재직기간 : 2018. 3. 27 ~ 2018.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316,666	
기본급	36,666,666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5,65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고상곤	'09.6.5.	제42기 정기 주총일	24 개월	운영위원회 (09.6월~11.6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09.6월~11.6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0.6월~11.6월)	-	(주)아이메카 회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국PR 협회 감사
류해성	'10.6.1.	제43기 정기 주총일	25 개월	운영위원회 (10.6월~12.6월) 보상위원회 (10.6월~12.6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0.6월~12.6월)	-	서대문구 부회장 민주 평화통일 지문회의 학교 법인 건국 발전 지문 위원장
홍성일	'10.6.1.	제43기 정기 주총일	25 개월	보상위원회 (10.6월~12.6월) 감사위원회 (10.6월~12.6월)	선임사외이사 (10.6월~12.6월) 보상위원장 (10.7~12.6월)	IBK 투자증권 사외이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증권 부사장
오찬석	'10.6.1.	제43기 정기 주총일	25 개월	보상위원회 (10.6월~12.6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0.6월~12.6월) 감사위원회 (10.6월~12.6월)	감사위원장 (10.7월~12.6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엘지하우시스 사외이사 한영회계법인 고문
박진규	'11.6.1.	제44기 정기 주총일	25 개월	운영위원회 (11.6월~13.6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1.6월~12.6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1.6월~12.6월) 보상위원회 (12.6월~13.6월)	보상위원장 (12.9월~13.6월) 선임사외이사 (12.6월~13.6월)	한국개발전략연구원(KDS) 수석연구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 고문 재무부
김상우	'12.6.29.	제45기 정기 주총일	21 개월	보상위원회 (12.6월~14.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2.6월~13.6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2.6월~13.6월) 운영위원회 (13.6월~14.3월) 감사위원회 (13.11월~14.3월)	선임사외이사 (13.6월~14.3월) 리스크관리위원장 (12.9~13.6월) 보상위원장 (13.6월~14.3월)	조흥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은행 은행감독국장
강정호	'12.6.29. (14.3.25 연임)	제46기 정기 주총일	32 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2.6월~15.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2.6월~15.3월) 감사위원회 (12.6월~15.3월)	감사위원장 (12.6월~15.3월) 선임사외이사 (14.3월~14.7월) 이사회회장 (14.7월~15.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원 교수/원 장 경상남도 정부부지사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증권시장시장 IMF 대리이사
조기상	'12.6.29.	제45기	2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2.6월~14.3월)	-	(사)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본부 사무총장

		정기 주중일	개월	감사위원회 (12.6월~14.3월)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롯데캐피탈 금융담당이사 IBK 기업은행/동남은행 자금부장
신호주	'13.6.21. (15.3.27 . 연임)	제46기 정기 주중일	21 개월	보상위원회 (13.6월~15.3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3.6월~14.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3.6월~15.3월) 운영위원회 (14.3월~16.3월)	리스크관리위원장 (13.6월~15.3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 (15.3월~16.3월)	(現)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 문위원 삼일PwC 컨설팅 고문 코스닥증권시장 대표이사 한국증권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산업은행 감사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국장
황장수	'14.3.25.	제47기 정기 주중일	12 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4.3월~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14.3월~현재) 운영위원회 (14.7월~15.3월) 보상위원회 (15.3월~16.3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 (14.3월~15.3월) 리스크관리위원장 (15.3월~16.3월)	(現)승의여자대학교 경영학 과 겸임교수 (現)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국인의료보험공단 설립준비 위원 농림부장관 자문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대통령직속 농어촌 발전 위 원회 전문위원
조대환	'14.3.25.	제47기 정기 주중일 (15.1.30 중도퇴임)	11 개월	보상위원회 (14.3월~15.1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4.3월~15.1월) 감사위원회 (14.3월~15.1월)	보상위원장 (14.3월~15.1월)	(現)하우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커뮤 니티 위원장 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조대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차장)
변환철	'15.3.27	제49기 정기 주중일 (16.03. 중도퇴임)	13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5.3월~현재) 위험관리위원회 (15.3월~현재) 감사위원회 (15.3월~현재) 운영위원회 (16.3월~16.11월)	감사위원장 (15.3월~16.3월)	(現)법무법인 이보 대표변호 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 사 대한주택보증 비상임이사(이 사회의장)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안동현	'15.3.27	제48기 정기 주중일 (15.10.3 0 중도퇴 임)	8 개월	보상위원회 (15.3월~15.10월) 감사위원회 (15.3월~15.10월)	보상위원장 (15.3월~15.10월)	(現)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 수 (현)포스코 사외이사 NH 농협은행 사외이사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RBS Head of Quant Strateg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 대 부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조교수

홍성일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6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월~17.03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월~18.03월) 감사위원회 (17.03월~18.03월) 보수위원회 (16.12월~17.03월)	위험관리위원장 (17.03월~18.03월)	(現)GK 파트너스 부회장(비 상근) 대우증권 사외이사 IBK 증권 사외이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신 공항공속도로 대표이사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 장
정운택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7.03.2 3 중도퇴 임)	3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월~17.3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월~17.3월)	-	동성 코퍼레이션(주) 사외이사 재단법인 정이있는 장학재단 이사장 (주)효성 재무본부장(사장) 효성캐피탈(주) 대표이사 효성그룹 파이낸스 사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병일	'16.2.5.	제50기 정기 주총일	35 개월	감사위원회 (16.2월~현재) 보수위원회 (16.2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2월~17.3월) 위험관리위원회 (16.3월~16.12월)	보수위원장 (16.2월~17.3월) 감사위원장 (17.3월~현재)	現)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 공교수 現)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주)대현 상임감사 재무부/재정경제부(원) 행정사무 관 및 서기관
황건호	'16.3.5	제50기 정기 주총일	34 개월	감사위원회 (16.5월~현재) 운영위원회 (16.3월~17.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3월~18.3월) 보수위원회 (17.3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6.3월~17.3월) 보수위원장 (17.3월~현재) 이사회회장 (17.3월~현재)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 수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 대우증권(주) 부사장
권태균	'17.03.24	제50기 정기 주총일	22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17.3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7.03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7.03월~18.03 월) 위험관리위원장 (18.03월~현재)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 삼성전기(주) 사외이사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조달청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금융 정보분석원장/경제자유구역기획 단장
박찬수	'18.03.27	제50기 정기 주총일	10 개월	감사위원회 (‘18.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0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8.03 월~현재)	現) 피인스톤 대표 대신증권 사외이사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조사1 국 국장

※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2018년 12월 기준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 역시 2016년 10월 25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 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동 임원의 요건에 부합함을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자격요건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2016년 10월 25일 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7 조에 정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동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최고경영자의 중도 사임의 경우와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및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에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전부터, 사임 시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 바, 미래에셋대우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기간 이내에 최종 후보자 중 최고경영자를 선발하되,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되고,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 아닐 경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2016 년 12 월 30 일 개최한 FY2016 제 20 차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내 등기이사 중에서 직위, 위촉일(현 직위 위촉일을 말함),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이사의 부재시 부문대표 중에서 상기와 동일한 순위로 해당 부문 대표가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사고, 건강상 사유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즉,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선정부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를 통한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법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5 조에도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 부회장은 2016년 11월 4일 개최한 제 16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고, 조용기 부회장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한 제 3 차 이사회 에서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용기 부회장은 2018년 3월 27일 개최한 제 7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 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와 조용기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 사 항 목	대표이사	
	최현만	조용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p> <p>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 1호 또는 제 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p> <p>－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고, 동 사규 제 37 조에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 부회장은 2018년 3월 27일 개최한 제 7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 및 조용기 대표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동 자격요건의 충족을 충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16년 11월 4일 홍성국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동일자에 최현만 現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됨으로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1월 4일 제 48기 제 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

최하여 최현만 사내이사를 선임하였고, 동일자에 제 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제 16 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용기 대표이사는 2017 년 3 월 24 일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년 3 월 3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2017 년 3 월 24 일 제 3 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는 2018 년 3 월 27 일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8 년 3 월 6 일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18 년 3 월 27 일 제 7 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최현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서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조웅기 대표이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 (舊)미래에셋증권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지침을 동사규 제 38조와 제 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내부 후보군은 회사와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 핵심포지션 담당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금융산업 경력 보유자로서 관련 법률 및 사규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아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i) 주주, 사내 추천, 기관투자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 ii)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
- iii) 회사 최고경영자 및 외부 자문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예비 후보군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후보군을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위 검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속한 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후보군 현황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18 사업연도 중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3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

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 사규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연임 또는 변경 등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게 2018 년 3 월 27 일 제 7 차 이사회에서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 년 10 월 25 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6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담당부서로 하고, 동 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i)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ii)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iii)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이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2018.2.27.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조직 : 1. 지배구조 일반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참고
 - 인원 구성 : 팀장(총괄) 1 명, 수석매니저 1 명, 선임매니저 8 명, 매니저 2 명, 대리 1 명, 주임 1 명
 - 지정사유 : 미래에셋대우 경영관리팀은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고 담당 인력 및 업무수행 경험 등이 충분함.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3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분야 전문가,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및 감독·검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되고, 이사회 및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전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을 상근 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부의안전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 소집된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부의안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18년 3월에 소집된 2018년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이에 내부회계관리자가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FY2017 재무제표에 대해 자체 결산감사를 '18년 1월에 실시하였으며, FY2018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점검을 '18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재무 및 업무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10)

'17년 3월에 소집된 2017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이 승인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올해 안에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외부감사 진행 경과 및 절차상 특이사항 발생 여부,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감독·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과 감사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등 감사보조조직 업무통할에 관한 권한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한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등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정기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매 연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이후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일상감사 주요사항보고, 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실시결과 보고, 감독기관 수검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중에는 '18 년 1 월에 소집된 감사위원회에서 '2018 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 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447 의 3, 542 의 12)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외감법§8)

감사위원회는 2018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외감법§8¹⁾)

그 외 제 9 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8 년 제 3 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후, 동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18)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8 년 제 1 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18 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 1 회 보고 받았습니다.

1) 2018 년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된 사안으로 개정 전 외감법 조항 적용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상법§415의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상법 §542의 11, 동법 시행령 §37의 2)

또한 상근감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되지 못하며(상법§542의 8), 이외에도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될 수 없습니다.(상법 §542의 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3인 모두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김병일 위원장은 재무부와 재경부에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박찬수 위원은 증권감독원과 금융감독원에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근무하였

습니다. 또한 황건호 위원은 대우증권에 입사하여 대우증권 부사장,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2012 년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김병일 위원장은 2007 년부터 현재까지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하며, 박찬수 위원 역시 1982 년부터 2009 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홍성일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 49 기 정기주주총회(2018.3.27)에서 박찬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병일	(現)사외	위원장	‘16.2.5.	제50기 정기주총일
황건호	(現)사외	위원	‘16.5.13.	제50기 정기주총일
박찬수	(現)사외	위원	‘18.3.27.	제50기 정기주총일
홍성일	(前)사외	위원장	‘15.3.27.	제49기 정기주총일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18년 총 11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참석율은 97%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 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50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18.1.31 오전 10 시 30 분 개최

[안전 통지일 : 2018.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1)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2018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전

- 2017년 감사결과 보고
- 2017년 하반기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제 50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18.2.23 오후 4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심의안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案)

– 제 50 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 2018.3.6 오전 9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홍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FY2017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FY20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4호안건 FY2017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채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제49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 제 49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 50 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18.3.27 오전 10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3.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²⁾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案)	- ¹⁾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김병일 위원은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불가
- 2) 제49기 정기주주총회(2018.3.27)에서 홍성일 감사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박찬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제 50 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18.4.18 오후 4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4.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18.6.28 오전 11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6.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7 차 감사위원회 : 2018.7.27 오전 9 시 4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7.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¹⁾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불참	찬성	가결

1) 황건호 위원은 해외출타로 불가피하게 불참함.

- 제 50 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18.7.27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7.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제 50 기 반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제 50 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18.9.17 오전 9 시 30 분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9.14]

1) 보고안건

- 내부회계제도 감사위원회 보고

- 제 50 기 제 10 차 감사위원회 : 2018.11.29 오후 2 시 개최

[안건 통지일 : 2018.1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조치 요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0 기 제 11 차 감사위원회 : 2018.12.20 오전 11 시 개최

[안전 통지일 : 2018.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박찬수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18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1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6호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감사보조조직을 둘 수 있으며(감사위원회규정§20),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14)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예하 감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본부장의 감사1,2,3팀 30명, 상시컨설팅팀 1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2019년 1월 기준)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하여 종합감사, 부문감사 및 기획테마감사, 상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 수검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설정하고 전사적 위험관리 업무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이사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별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 사업계획, 운용현황, 대외규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액 규모를 기준으로 회사의 위험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위험한도 설정 시, 회사의 연간 사업계획과 수익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

위험부담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예비한도 확보를 통해 사업계획상 실행가능성이 유동적인 투자/운용 건 및 제도변경 등에 따른 위험액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 총 16회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 및 회사 내 자산운용 부서별 수익목표를 점검 한 후,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정 재무건전성 비율을 고려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 유형별로 회사가 연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과 자산운용부서가 분기 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투자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한도와 관련된 규제사항 및 모범규준을 점검하고, 회사의 자기자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총량적 투자한도(신용공여·우발채무·부동산투자)·기업집단별 총 투자한도·동일인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한 단일투자에 대해서 건별로 투자를 승인하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주요한 단일투자 총 9건(조건 변경건 포함시 총 13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적정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사의 투자한도 소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회사내 투자 전담부서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투자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회사의 적정 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이사회는 당사의 기본규정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인 위험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일반규정을 제·개정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정한 세칙 및 지침의 경우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 제·개정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인 심사일반규정의 개정이 1건 있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 관련 외부 규제사항, 모범기준 및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한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위험현황을 점검하고 회사의 종합적 위기관리체계를 관리할 의무 및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18년 중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현황, 회사의 주요 투자 건에 대한 진행사항, 회사내 위험자산 편입현황, 회사 및 영업부문별 위험 한

도 소진상황, 운영리스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험관리 관련 정책결정 사항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점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외 규제 환경 변화의 방향 및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주요 위험 관리방안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인(대표이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중은 금융감독원 권고기준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적절한 수준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위원 선임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중 홍성일 위원은 2018년 3월 임기가 만료 되었으며, 사외이사인 황건호 위원이 2018년 3월 신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말 현재 위험관리위원회는 모두 3명의 이사(2명의 사외이사, 1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중 재임하였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권태균	(現)사외	(現)위원장	17.03.24	19.03.정기주총
황건호	(現)사외	(現)위원	18.03.27	19.03.정기주총
조웅기	(現)상임	(現)위원	17.03.24	19.03.정기주총
홍성일	(前)사외	(前)위원장	16.12.30	18.03.27

* 최초 선임일 기준임

3)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 제 7 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3 인 이상의 이사로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 인(대표이사 1 인 및 사외이사 2 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권태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및 지식경제부에 재직하였고, 조달청장 및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서의 행정경력 및 Global 업무감각은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황건호 위원은 40 여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며 금융투자회사 CEO,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합니다.

조웅기 위원은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금융 투자 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합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8년도에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16회 소집되었고 위원들의 100% 참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결안건 35건, 보고안건 10건, 심의안건 1건이었습니다.

정기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4회 소집되어 회사의 연간 및 분기별 총 위험액 한도 설정, 주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12회 소집되어 회사의 주요 투자 집행 및 한도변경 등에 대한 승인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위험 현황 및 신규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주요 투자건의 진행상황, 위험자산 편입현황, 각종 위험한도 소진현황, 운영리스크 현황 등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50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1.04 오전 9 시

[안전 통지일 : 2018.01.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조용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8 년 1 분기 위험액 (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등 총 1 건 보고
- 2) 2018 년 1 분기 위험액 한도 설정
- 3) CRO 승인에 의한 전용 내용 반영 및 대고객 신용공여한도 관리 내용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5)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제 50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1.31 오전 8 시

[안전 통지일 : 2018.01.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홍성일	권태균	조용기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조용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심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빌딩 총액인수 승 인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기상황 분석 결과, 종합위기관리체계 점검 결과,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등 총 3 건 보고
- 2) 가치평가소위원회 및 금융상품소위원회 설치, 운영리스크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주문한도의 관리 일관성 확보, 채권유니버스 적용 업무 및 개정시기 명확화 등을 위한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
- 3) 시장성투자의 자기자본투자 승인기준 신설
- 4)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빌딩 총액인수 관련 부동산펀드수익증권 매입 및 일부 수익증권의 만기 보유

- 제 50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2.23 오후 4 시 30 분
[긴급사유 발생으로 위원장이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소집]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을 위한 LOC 제출의 건

- 제 50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06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8.03.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SK E&S 유상증자 TRS 기초 유동화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기업금융자산 확대에 따른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변경
 2)SK E&S 유상증자 TRS 기초 유동화 거래로 인해 (주)SK 향 동일 거래상대 방 투자한도를 일부 초과하게 되어 한도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위함

－ 제 50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16 오전 09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03.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홍성일	권태균	조용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조건 변경의 건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HNA Group 의 Hilton Group 지분 담보 인수금융 Refinancing 조건 변경으로 인한 LOC 한도 증액

- 제 50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3.27 오전 10 시 40 분

[안전 통지일 : 2018.03.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8 년 2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 쓰펀드(가칭) 투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판교 알파돔시티 6-3 블록 오피스빌딩 총액인수 조건 변경의 건 등 총 3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2017 년 4 분기 결산 결과 반영하여, 자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4)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신용공여 기준(무등급) 상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쓰 펀드(가칭)’ 투자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4.20 오전 8 시

[안전 통지일 : 2018.04.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용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쓰 펀드 투자 출자구조 변경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³⁾ 홍콩 'The Center' Acquisition Financing 투자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기업신용공여 한도 관리대상 중 매입대출채권(사모사채포함) 제외
- 2) 제 50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 그로쓰 펀드' 투자 출자구조(출자대상법인 및 관리보수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3) 홍콩 "The Center"빌딩 매입을 위한 Deferrable Senior Secured Tr.A Note 매입 및 일부 만기 보유

- 제 50 기 제 8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5.02 오후 4 시

[안전 통지일 : 2018.04.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대균	황진호	조용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심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해외투자거래 증가에 따른 해당 부문의 전문 지식 활용을 위한 위원 선임
- 2) 투자자 수요 증대 및 글로벌 IB 와의 경쟁력 제고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특정 등급 이하 지분 및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및 신용공여 승인 기구 투자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 제 50 기 제 9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5.23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8.05.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미래에셋 Global Long Short Fund 투자의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2018 년 1 분기 결산 결과(우선주 유상증자 등) 반영하여 신용공여 한도 변경
- 2)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시장성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Mirae Asset Global Long Short Fund’ 투자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6.15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8.06.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당사의 투자승인절차를 규정한 심사일반규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른 별표 1 의 자기자본투자/신용공여 기준(무등급)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 매각 입찰 참여 승인 요청의 건

- 제 50 기 제 1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6.28 오전 11 시

[안전 통지일 : 2018.06.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18 년 3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 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 조건 변경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1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제 50 기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프랑스 Dunkerque LNG 터미널 지분매각 입찰 참여’ 의 조건(입찰가격)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제 50 기 제 1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8.30 오후 02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18.08.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¹⁾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동일거래상대방 신용 한도 신설 및 변경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블라인드 PEF LP 투자한도 신설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위기상황 분석결과 등 총 2 건 보고
- 2) 트레이딩 및 자금운용 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편중위험 관리를 위한 동일거래상대방 신용한도 신설 및 변경
- 3) 회수기간이 길며 투자검토 요소가 제한적인 Blind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 위험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 필요

- 제 50 기 1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09.14 오전 8 시 50 분

[안건 통지일 : 2018.09.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 승인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2018 년 4 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관련 기준 중순위 채권 투자와 함께 자산 취득을 위한 Equity 인수 및 CTL 을 통한 매각 진행
- 2)채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제 50 기 제 1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0.19 오전 10 시

[안건 통지일 : 2018.10.1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_조건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Blind PEF LP 투자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제 50 기 제 13 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스페인 마드리드 Banco Santander Global HQ 임차 Office 투자' 건의 조건(Equity 인수금액) 변경에 따른 재심의 요청
- 2) IB 부문 영업지원 및 Blind PEF LP 투자 증가에 따른 총 한도 변경 필요

－ 제 50 기 제 1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1.29 오후 2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11.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판교 알파돔시티 6-1 블록 및 6-2 블록 개발사업 PF LOC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²⁾ 동일 거래상대방 신용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 PF 관련 총액인수 확약 LOC 제출
- 2) 3 대 시중은행 전사 한도 변경

– 제 50 기 제 1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8.12.20 오후 3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18.1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권태균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쌍용양회 리파이낸싱 최대 1.4 조원 LOC 발급 및 참여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 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선 임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1 건 보고
- 2) 쌍용양회 리파이낸싱 관련 최대 1.4 조원 LOC 제출 및 대출 참여
- 3) 조직변경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 4) 조직변경에 따른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3) 평가

미래에셋대우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위험관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내부 전자결재 처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감사실 등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8. 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정관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의거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결의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 제반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당사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타법인 출자, 인허가업무, 유·무형자산의 취득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심의, 의결합니다. (운영위원회 규정 별표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제 1 호)

나) 기타 사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당사 운영위원회는 기타 사규에 의하여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합니다.(운영위원회규정 별표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제 2 호)

나. 구성(운영위원회 위원)

1) 총괄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규정 제 3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최현만	상임	위원장, 대표이사	'16. 11. 04	'19. 3 월 정기주총일
조웅기	상임	사내이사, 대표이사	'18. 03. 24	'19. 3 월 정기주총일
김상태	상임	사내이사	'18. 03. 27	'19. 3 월 정기주총일

* 위원회 선임일 기준

※ 김국용 사내이사 2018 년 3 월 27 일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는 '18 년에 총 16 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사의 참석률은 100%로 운영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50기 제 1차 운영위원회: 2018년 1월 15일(오후 2시)

[안전통지일 : 2018년 1월 8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 50기 제 2차 운영위원회: 2018년 2월 9일(오전 10시 30분)

[안전통지일 : 2018년 2월 2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50기 제 3차 운영위원회: 2018년 3월 16일(오후 3시)

[안전통지일 : 2018년 3월 9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국용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50기 제 4차 운영위원회: 2018년 4월 18일(오후 3시 30분)

[안전통지일 : 2018년 4월 11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가. 1 호안건 : 미국 내 투자전문회사 설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 50 기 제 5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5 월 25 일(오후 5 시)

[안건통지일 : 2018년 5월 18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인도 외국인투자자 등록(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 50 기 제 6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6 월 28 일(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18년 6월 21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외국은행 계좌 개설 및 정보변경 추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 미국 내 특수목적회사 출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 50 기 제 7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7 월 13 일(오전 11 시)

[안건통지일 : 2018년 7월 6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베트남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 싱가포르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 50 기 제 8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7 월 27 일(오전 9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7월 20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 50 기 제 9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8 월 30 일(오후 2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8월 23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한국임팩트금융 유한회사 출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 50 기 제 10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9 월 28 일(오후 3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9월 21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카) 제 50 기 제 11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10 월 22 일(오후 3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10월 15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Mirae Asset Securities & Investment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제 50 기 제 12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11 월 21 일(오전 9 시 30 분)

[안전통지일 : 2018년 11월 14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주요직책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파) 제 50 기 제 13 차 운영위원회: 2018 년 11 월 29 일(오후 2 시)

[안전통지일 : 2018년 11월 22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Mirae Asset Realty(Vietnam)Ltd. 및 Mirae Asset Realty(Singapore) Pte. Ltd. 청산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하) 제 50기 제 14 차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3일(오후 4시)

[안전통지일 : 2018년 11월 26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본부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제 50기 제 15 차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20일(오후 4시)

[안전통지일 : 2018년 12월 13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주요 직책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				
가. 1 호안건 : 차세대시스템 추진 완료 보고	-	-	-	-

나) 제 50기 제 16 차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26일(오후 2시 30분)

[안전통지일 : 2018년 12월 19일]

항목	위원 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 퇴직임원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 운영위원회는 내규에서 정한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의사결정 사항이 절차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절차상 적정성을 감독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을 통하여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9. 사회적책임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정관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의거 사회공헌 및 기업사회책임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회적책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 사회적책임위원회는 기부,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등 기업사회책임 활동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기타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나. 구성(사회적책임위원회 위원)

1) 총괄

사회적책임위원회의 구성은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최현만	상임	위원장, 대표이사	'18. 10. 25	'19.3 월 정기주총일

황건호	사외	위원	'18. 10. 25	'19. 3 월 정기주총일
박찬수	사외	위원	'18. 10. 25	'19. 3 월 정기주총일

* 위원회 선임일 기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사회적책임위원회는 '18.10.25 에 설립되었고, 2018 년 개최 이력은 없습니다.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당사는 '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상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관련 사규에 규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본 연차보고서의 다른 항목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제시할 지배구조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첨부 1. 미래에셋대우 정관

정 관

제 정 :	1970. 9.16	
개 정 :	1971. 8. 9	1971.11.23
	1972. 1. 4	1973. 9.24
	1973.12. 1	1974. 1.25
	1974. 7. 2	1975. 5.14
	1975. 8.28	1975. 9. 9
	1977. 7.22	1978. 2.27
	1980. 3.31	1980. 4.30
	1981. 2.26	1982. 2.26
	1982. 5.14	1983. 9.14
	1983.12.22	1984. 5.29
	1984. 7.20	1985. 5.11
	1986. 5.20	1987. 5.23
	1988. 5.28	1989. 5.20
	1990. 5.26	1991. 5.25
	1996. 5.25	1997. 5.31
	1998. 5.31	1999. 5.29
	2000. 5.27	2001. 5.26
	2002. 6. 1	2003. 6.17
	2004. 6.11	2005. 5.27
	2006. 5.26	2008. 6. 5
	2009. 6. 5	2010. 6. 1
	2012. 6.29	2013. 6.21
	2015. 3.27	2016. 3.25
	2016. 5.13.	2016.12.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IRAE ASSET DAEWOO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 ①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중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투자자문업
 - 마. 투자일임업
 - 바. 신탁업
 - 2.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 억주로 한다.

제 6 조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8조 내지 제8조의6에서 정한 1종 내지

6종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 8 조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의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3 (의결권제한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이사의 선임·해임
 - 2.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중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존속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2. 전환조건 및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보다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 미만인 경우

다.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경우

-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의 5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

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의 6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종류주식의 전환, 전환기간의 연장, 종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조의2 제5항, 제8조의4 제3항 및 제4항, 제8조의5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와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십만주권, 일백만주권의 10 종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또는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기이사를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로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45 조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2 조의 2 (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

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채의 전자등록 등)

- ①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1 조와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임기는 이사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사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삭제 <2016. 11. 4.>

제 34 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의장)

- ① 회사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 중 1인을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의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그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제38조의2에 따른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위원회)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39 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거나 그 결의로 이사의 보수(급여·상여 등)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 ② 퇴직공로금 및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0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4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을 둘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3 조의 2 삭제 <2016. 11. 4.>

제 4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이익배당의 지급을 통지받은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5 조의 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6 조 (보칙)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상법」,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 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된 자는 제3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 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 년 6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 30 조의 2 제 1 항 및 제 31 조 제 1 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 31 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 조 제 1 항의 개정조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변경되는 이사 보수 결정시부터 적용하며, 제 13 조 및 제 41 조의 개정내용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라 2013 년도에 한해 사업연도를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적용한다.

제 2 조(종류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 31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종류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 내지 제 8 조의 6,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종류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부터 적용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10.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와 투자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다만 단순한 용어의 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현황

제3조(이사회 구성) ①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1명 이상의 상임이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1명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

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및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③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회 활동의 조정자 역할
2. 대표이사와의 이사회안건 조정 및 협의
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본 규범에서 이사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비상임이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이사의 결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7조(이사회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에서 이사회에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회사

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지배구조법 제15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9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그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10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

3. 임기중 관련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특별결의한 경우

② 이사에 결원이 생겨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1조(이사회 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른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의제와 이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까지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에게 발송(팩스 또는 전자메일에

의한 발송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 수준,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및 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시 반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4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

원회를 설치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선임할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감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 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밖에 관련 법령, 정관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보수위원회)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

항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각 위원회는 매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의 제공수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위원회의 운영에 참고한다.

③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가 정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1조(임원의 범위) ①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22조(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임원 중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을 두루 갖춘 자로서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결격요건) ① 이사인 임원의 결격요건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되지 못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24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각 업무집행책임자별 전결권한은 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9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은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 따른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하거나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책임자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0조(이사 퇴임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5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임용계약,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회사가 업무집행책임자와의 위임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6. 기타 회사와 업무집행책임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유고 시 대표이사가 정한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회사는 제25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27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된 경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재직 경력 등 업무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8조(임원 후보자의 선정과 교육) ①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로 추천한다. 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후보로 추천한다.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후보군은 조직 내에서 관련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직급 및 직무에 있는 자들로 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임원후보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 회사는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후보자의 임원 임면에 참고한다. 다만 필요 시 별도의 임원적합성 평가 등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29조(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보수체계는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하되, 수익성 등 계량적인 평가 외에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고 장기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수의 지급 결정 시에 활용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 재선임 결정 시에 활용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 또는 재선임 시에 활용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한다.

②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본급, 성과급의 한도 및 지급 기준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1조(정의) 본 규범에서 말하는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2조(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중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발하되, 이를 위하여 신규 이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등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제3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① 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②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에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전부터, 사임 및 유고 시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라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

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상상황 시 승계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사고, 건강상 사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을 선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서 정한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6조(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담당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37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38조(최고경영자의 후보군) 최고경영자의 내부 후보군은 회사와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 핵심포지션 담당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금융산업 경력보유자로서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39조(후보군 선발, 검증 및 승인) ①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검증 등 다음 각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 사내추천, 기관투자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2.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

3. 회사 최고경영자 및 외부 자문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예비 후보군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후보군을 승인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를 포함한다)는 위 검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속한 자와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④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탐색, 발굴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0조(공시)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1조(최고경영자의 선임)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내로 이사회에서 정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그 절차는 제9조를 따른다.

제42조(최고경영자의 해임 및 퇴임) 최고경영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사 퇴임의 기준을 따른
다.

제43조(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
항과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최고경영자의 전결권한은 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최고경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주요 현안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최고경영자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책임을 진다.

제44조(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사회 규정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 12. 30

개정 2018. 07. 27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 소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이하 '이사'라 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이사 중 1 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회 활동의 조정자 역할

2. 대표이사와의 이사회안건 조정 및 협의
3.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 지원

제 5 조의 2(선임사외이사 등)

- ① 사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②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3 장 소집 및 운영

제 6 조(이사회회의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 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3 인 이상의 이사가 각 이사에게 이사회소집통지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하며, 각 이사는 의장에게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방법 및 절차)

- ① 제 6 조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당해 의장은 회일,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이사회소집통지서를 3 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소집통지서는 제 17 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 1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25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해임

2.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
3. 상법 제 397 조의 2 에 따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4.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는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업무담당임원은 소관부점장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결의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별표 제 1 호>와 같다.
- ② 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회 규정상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 ④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의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의제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각의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일시와 소집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소집요청을 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조항은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회의장소)

이사회는 본점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 15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별지서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 8 조 제 2 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사는 당해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제 17 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이사회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심의

- 1) 정관의 변경
- 2) 제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현금·현물·주식배당 결정
- 4) 회사의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및 합병보고를 포함한다), 분할, 분할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6)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
- 7) 주주제안의 채택
- 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등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주식명의개서 대리인 지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유상증자)

나. 준비금, 잉여금 및 적립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

다. 사채의 발행(주식관련 사채 포함)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라.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마. 자기자본 25% 이상의 금융기관 차입 또는 기업어음 발행

(단, 만기 7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 및 청약관련 차입은 제외)

바. 자기주식 취득·처분(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해지 포함)

사.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아.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가지금, 금전 및 유가증권의 대여 (최대주주 등, 임원,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에 한함)

4.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이사의 직무대행 순서 결정

다.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라.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대표자의 선임

마.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제 28 조 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 자의 임면

아.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

5. 사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6.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중요한 자산취득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가.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 관련 사채 포함), 출자지분 및 수익증권의 취득·처분
(단,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68 조 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나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및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의 주관 또는 인수회사로 발생 하는 건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제외)

나. 자기자본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따른 대규모 내부 거래의 승인

라. 해외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단, 동일 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면서, 단일 투자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인 경우는 제외)

9. 본사이전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운영
- 나.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다.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감사위원회 제외) 및 위원회가 그 결의를 통하여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11.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사규)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

- 가. 기타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행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나. 표창징계규정에 따른 공적상 표창 심의
- 다.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13.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사항

- 가. 그룹위험관리정책의 수립
- 나. 그룹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다. 그룹 및 소속금융사별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라. 그룹 및 소속금융사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마. 그룹위험관리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바. 그룹위험관리협의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대표위원의 지정
- 사. 그룹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아. 그룹 위기대응체계의 수립
- 자. 그룹위험관리협의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 차.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상기의 규정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 12. 30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조 (역할)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심사·추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 5 조(소집방법 및 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3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소집통지서는 제 9 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 3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3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회의장소)

위원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결의사항 및 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선임할 임원 후보의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
3.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 1 항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임원후보 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 추천절차의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제 5 장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규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 7 조 제 3 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제 11 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 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사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공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위원회규정

소관부서 : 감사본부

제 정 : 2016. 12. 30.

개 정 : 2018. 12. 2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 4 조)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개정 2018.12.20.>
5.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신설 2018.12.20.>

제 4 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고) ① 위원회는 사업연도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최소 연 1 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성

제 8 조 (구성) ① 위원회의 감사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② 위원회 감사위원 중 1 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 16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 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사안 중 중요 사안은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는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제 3 장 회의

제 11 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종료 후 1 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별지 제 1 호 서식)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 3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개정 2018.12.20.>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처리방안의 결정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처리방안의 결정

- 사.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자.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차. 조치 양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마.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협의
- 바.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6 조 (감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감사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
-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 3. 감사실시 등 감사보조조직 업무 통할
- 4.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준법감시인 관련 사항) ① 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3. 기타 관계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상근감사위원은 제 16 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고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③ 감사보조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④ 감사보조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내부감사 절차 등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21 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2 조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 대한 특칙)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 제 16 조 제 1 항, 제 18 조 제 1 항에서 정한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한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등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정기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감사인 선임 및 해임 적용례) 제 3 조제 4 호 및 제 13 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은 시행일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외부감사인부터 적용한다.<신설 2018.12.20.>

감사위원회 소집 통지서

감사위원

귀하

아래와 같이 제 기 제 차 감사위원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목적사항(부의안건)

20 년 월 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위원장 (인)

위험관리규정

소관부서 : 리스크정책팀

제정 2016. 12. 30.

개정 2017. 3. 24.

개정 2018. 1.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위험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지배구조법 및 정관에 따라 설치된 회사의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운영위원회”라 함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소위원회”라 함은 회사의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 규정에서 “CRO”(Chief Risk Officer)라 함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5. 이 규정에서 “위험관리책임자”라 함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라 함은 리스크관리, 심사, 사후관리 등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이 규정에서 “거래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에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이 규정에서 “결제담당부서”라 함은 거래담당부서의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금융투자”라 함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기자본을 지출하는 것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자산취득행위, 신용공여 및 인수 등의 거래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이 규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1. 이 규정에서 “Wrap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 규정에서 “부외거래”라 함은 선물(선도),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거래 또는 채무보증 등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시 사전검토 및 제반 사규관리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리스크관리 목표 및 전략)

- ① 회사의 리스크관리 목표는 경영상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장기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다.
- ② 제 1 항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리스크관리조직체제 구축
 2. 리스크관리실무 및 절차 구축
 3.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4. 전사적 리스크관리문화의 형성

제2장 리스크관리조직

제 1 절 리스크관리 조직의 구성

제5조(리스크관리 조직의 구성) 회사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 위원회, 운영위원회(위험 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및 심사업무,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로 구성한다.

제 2 절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②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CRO가 간사가 된다
- ③ 안건의 부의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제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 3인 이상의 이사로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개최 및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사안의 발생 등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24시간 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는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제 2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결의사항 등)

- ①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과 전략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
 - 2. 리스크관리 관련 일반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3. 회사의 위험자본 설정 및 건전성 규제 비율 최저한도 설정
 - 4. 전사한도, 손실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 5.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6. 위기상황분석의 승인 및 점검
 - 7.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8. 회사의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변경시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검토
 - 9. 부동산 PF 등에 관한 익스포져 한도 및 매입보장약정 신용위험회피조항의 최저 신용등급
 - 10.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적용에 대한 사항. 심사기준금리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험관리일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관리정책, 절차, 각종 한도, 내부통제환경 등의 적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
 - 12.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은 심사일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3.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운영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내용 중 세부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CRO 에 위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RO 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결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사항)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통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각각의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자의 출석 등)

- ① 상근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회사내 모든 리스크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회의록)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운영위원회와 투자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험관리운영위원회는 고유 및 고객 자산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안건 및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 및 주요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투자심사운영위원회는 투자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중요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 및 주요 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CRO 를 포함하여 회사내 주요 직책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정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배석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래의 중단, 포지션의 조정, 관련 담당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개최)

- ①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사안의 발생 등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 인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부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1 명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할 경우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③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안건의 부의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결의방법)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 별로 의결권이 있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사전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안건 별로 의결권이 있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 ~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 16 조 제 3 항의 배석위원은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험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 ①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문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2. 리스크관리 관련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3. 위원회가 승인한 한도 범위 내의 조직별, 영업활동별 리스크 한도의 배분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한도의 설정 및 변경, 이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4. 전사적 리스크 측정방법의 적정성 승인 및 점검
 5.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일상적인 변경 및 운영현황 점검

6. 거래담당부서에 대한 위험 조정 성과평가 기준
 7. 신규형태의 퇴직연금, 신탁, Wrap 관련 상품 도입의 승인
 8. 신탁자산 중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평가하기 위한 시가평가 업무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87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정한 업무
 - 가.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 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 다. 기타 신탁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9.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금융투자상품등의 위험등급 기준 마련 및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상품의 위험등급 결정
 10.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등의 취급기준 마련 또는 취급승인(제한) (그 명칭, 취급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제반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 관련 일반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다.
 11. 고객자산 관련 위험관리 기준
 12. 기타 리스크관리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내지는 위험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② 위험관리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내용 중 세부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CRO 에 위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RO 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결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 ①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문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2.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3.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투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은 심사일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내지는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한 사항
- ② 투자심사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내용 중 세부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CRO 에 위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RO 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내용에 대하여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투자심사운영위원회는 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서의 결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결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운영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의결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확인(협조결재 등)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의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소위원회

제23조(부문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운영위원회는 부여된 권한 내에서 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분야별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설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 구성
 2. 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3. 위원회 업무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4. 소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CRO 를 포함하여 회사내 주요 직책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CRO 가 담당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배석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의 개최 및 결의)

- ① 소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 1 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 별로 의결권이 있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안건 별로 의결권이 있는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소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 2 항 ~ 제 4 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 24 조 제 3 항의 배석위원은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부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1 명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할 경우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⑦ 소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⑧ 안건의 부의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 ⑨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의 결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결의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의무) 소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에 대한 주요 내역을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소위원회를 관할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소위원회 개최시 내용과 결과를 기재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의결서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확인(협조결재 등)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절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제28조(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설치) 회사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과 결의사항의 집행, 각종 리스크의 측정, 관리, 통제 등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상설

기관으로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제29조(구성 및 운영원칙)

- ①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거래담당부서 및 결제담당부서 등 회사의 타 업무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된 사용공간,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보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임직원은 거래담당부서 등 지배구조법에서 금지한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③ CRO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임직원은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사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인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분 및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위험관리책임자)

- ① CRO는 지배구조법 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② CRO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상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1조(CRO의 권한과 책임) CRO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총괄
2. 리스크관리 정책 시행, 자원 배분 검토,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등
3.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32조(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업무)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의·지시사항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2.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등의 관리 및 보관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비율의 산정 및 대내외 보고
 4.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인수업무 등 각종 거래업무 관련 검토 및 보고
 5. 리스크에 대한 측정방법 마련 및 적정성 검토, 모니터링 및 보고
 6.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위험조정 성과측정 방법의 검토
 8.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보고

9.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10.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및 점검
 11. 금융투자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및 심사, 사후관리
 1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분석
 13.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문화 전파
 14.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검토 및 보고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제 1 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권한)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규의 해석에 있어, 1 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다. 단, 관련부서에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관리규정 제 11 조에 따른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규정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에게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규업무 및 상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리스크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규 업무 및 상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리스크관리 실무

제34조(관리대상 리스크) 이 규정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는 리스크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장리스크”라 함은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2. “신용리스크”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및 채무이행능력의 변화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3.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유동성 부족 또는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운용자산을 정상적으로 청산하지 못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 및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4. “운영리스크”라 함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부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5. “금융시스템리스크”라 함은 개별회사 및 시장의 붕괴, 이로 인한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6. 위원회에서 이외에 리스크 유형을 지정하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한도 설정)

- ① 회사 및 거래담당부서는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CRO는 필요한 경우 제 1 항의 한도에 추가하여 세부적인 기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거래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 1 항과 제 2 항의 리스크한도 이내에서 상품별 또는 운용담당자별로 한도를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 결과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거래담당부서는 제 1 항과 제 2 항의 리스크한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한도 관리)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한도 준수여부를 일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RO의 승인을 받아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각종 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리스크 현황 보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의 리스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리스크한도의 준수 및 초과 절차)

- ① 거래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서의 리스크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도 초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한도초과의 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거래담당부서는 한도초과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한도초과 포지션의 해소방법에 관한 계획, 기타 거래특성 상 필요한 사항 등을 명기한 거래계획을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부문 또는 본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담당부서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RO 의 승인을 얻어 사업부문 또는 본부 내의 한도를 전용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CRO 가 정한 기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RO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크한도를 정한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제 1 항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담당부서가 배분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CRO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한도초과 상태에서 추가로 포지션을 취득하는 경우
 2.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 포지션을 취득할 수 없는 부서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4. 당해 포지션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신용이 집중되거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④ CRO 는 제 3 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담당부서에 대해 거래정지, 포지션정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 ⑤ 거래담당부서가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장환경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변동등에 의하여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도 제 4 항을 준용한다.(해외투자등 단순환율변동에 기인한 사항은 리스크관리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단, CRO 는 거래담당부서의 자율대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3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도를 승인한 승인기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39조(리스크관리시스템)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거래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측정·분석하고 리스크 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제 1 항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 ③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격평가모형 및 리스크 측정모형 등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 모형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 ④ 리스크관리시스템 변경 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대상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로 한다.

제40조(위험관리 비상계획)

- 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위기상황은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대외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대량손실 등을 포괄한다.

제41조(재무건전성 관리)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법률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한 적정 수준 범위 안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재무건전성 지표를 규제 수준에 부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거래부서의 운용자산 내용과 운용방법, 운용에 따른 영향도,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칙에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재무건전성에 과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자산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투자 기준 및 운용한도를 정할 수 있다.
- ④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단기차입금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부외거래에 대한 기록 유지) 거래담당부서는 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관리 담당부서, 결제담당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부외거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외거래를 기록할 양식과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3조(리스크관리 일반규정 등)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및 심사업무 관련 일반규정, 세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일반규정 및 세칙을 따르며, 일반규정 및 세칙에서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관행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내의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45조(관련 문서관리)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 및 서류, 회의록은 회차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단, 10년이 지난 문서는 문서관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세칙 등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CRO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는다.
- ②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세칙 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③ 제 2 항의 경우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중대한 위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1. 본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규정 제 38 조 제 5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유예기간은 개정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3. 본 규정 제 19 조 제 1 항 제 10 호의 개정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한다.

보수위원회 규정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 12. 3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제 4 조 (소집방법 및 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소집통지서는 제 9 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장소)

위원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 심의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의 보수한도
 2.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자 선정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방법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반 조치
- ③ 위원장은 제 1 항의 각 호의 업무 수행결과를 이사회에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 6 조 제 3 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제 9 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 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사무를 담당한다.

제 10 조 (기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6. 12. 30

개정 2017. 03. 24

개정 2018. 07. 27

개정 2018. 12. 0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바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조 (소집방법 및 절차)

- ① 위원회의 소집시기 및 장소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소집통지서는 제 12 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제안설명)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는 관련업무담당임원이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소관부점장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8 조 (결의사항)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별표 제 1 호>와 같다.

제 9 조 (보고의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 5 조 제 2 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제 11 조 (회의장소)

위원회는 본점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12 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 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기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본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본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1.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지배나 참여 목적인 타법인이 발행한 주식(주식관련 사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처분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자기자본 10%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국내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 2) 자기자본 2.5%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나. 자산재평가

다. 인허가 업무 (단, 이사회회의 부의사항은 제외)

라. 자기자본 5% 이상 자기자본 25% 미만의 금융기관 차입 또는 기업어음 발행(단, 만기 7일 이하의 금융기관 차입 및 청약관련 차입은 제외)

마. 복지기금의 출연

바.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출

사. 자기자본 10%미만의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및 단일재화 용역계약 체결건(단, 단, 건당 100 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아. 「직제규정」 제 4 조 제 2 항에 따른 본부단위 이상 조직 단위장인 직책자의 선임(단, 이사회 결의사항 제외)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른 사규에서 운영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기의 규정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

사회적책임위원회 규정

소관부서 : 경영관리팀
제정 2018. 10. 25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조 (소집방법 및 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소집통지서는 제 10 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장소)

위원회는 본점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결의사항 및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기부,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 연간 사업계획 수립
 2. 금융소비자보호 등 기업사회책임 활동 연간 사업계획 수립
 3. 기타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 6 조 제 2 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③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제 9 조 (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 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기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내부통제기준

소관부서 : 법규준수팀
제정 2016.12.30
개정 2017. 1.17
개정 2017. 3. 3
개정 2017. 5.29
개정 2018. 2.23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자금세탁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독
2.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의 평가,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점장)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4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본부장,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법무담당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세칙에서 정하는 주기 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법서약서의 양식,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과정의 수립 및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및 자문) ①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및 자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

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정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이하 “준법관리인”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으며 준법관리인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임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타사업체에 겸직할 수 없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겸직으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겸직내용의 시정 또는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임직원 겸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내부제보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제보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내부제보제도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제보자 보호 조치와 회

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내부제보자가 제보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제보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제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세칙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동 기간 중 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① 회사는 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 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①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외에 대고객 업무수행 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사규에서 정한다.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0조, 제71조 및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2.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3.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임직원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약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③ 기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신탁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109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신탁업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나 별도의 보조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2.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3.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4.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⑨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7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이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⑥ 기타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①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추가연계증권(ELS)·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을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 내부 대여금·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④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 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1항제7호의2 가목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 리스크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39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②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과당매매 권유 방지를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회사는 고객에게 사이버거래의 주문체결 속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주문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회사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회사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

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 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매매주문 등의 수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2.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장애 시의 대체 주문방법을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전산장애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매매체결의 재개 등에 필요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것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주문착오 방지체계 구축·운영, 착오주문 발생시 처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등) 회사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정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40조의12(주문수탁 및 체결내역 통보 등) 투자자의 매매 주문의 수탁 및 체결내역 통보,

매매거래 통지,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①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 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약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약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 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④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

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 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57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투자광고에 대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법인 영업)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4.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5.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거래

②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집합투자증권 판매)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 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률의 보장
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⑤ 기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금융사고 예방) 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기타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49조의3(기타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50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 53 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이 총액과 증권이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8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③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

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8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회사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동일 사업본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접근 권한 및 정보차단벽의 통과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59조(한정통과) ① 제5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회사는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할 것.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승인받은 임직원은 당해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4.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②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하되,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정보가 공개되는 등 더 이상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비밀정보의 관리책임자는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통과 승인 해제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와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간주통과)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우연하게 비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하 “간주통과자”라 한다)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간주통과자는 습득한 비밀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①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한 자가 회의에 관하여 기록(이하 “회의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각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3. 회의일시, 회의시간 및 회의장소
 4. 회의목적
 5. 회의의 주요내용. 다만, 이 경우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신을 한 자가 통신에 관하여 기록(이하 “통신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2. 통신일시 및 통신방법
 3. 통신목적
 4. 통신의 주요내용
- ④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통신에 대하여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⑤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의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의 기록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열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 사유) ① 이 절의 규정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회사는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회사는 그 계

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①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②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이 이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요청을 승인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정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요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①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정한 기록유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63조제3항에 따라 계열회사가 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제공하려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

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① 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회사가 정한다.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①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67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점검을 통하여 이 기준에 위반하여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회사가 제5절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절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하 이 절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제70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제70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2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① 제7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 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7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① 회사 또는 임직원은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한 또는 이해관계 명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절 정보차단벽의 유지 및 관리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2.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

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영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영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임직원 본인과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

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내부통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제한과 관련된 사항 및 내부통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77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8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①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 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0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사규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87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등)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③ 임직원이 광고성 보도자료를 언론기관 등에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전산시스템

제92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

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93조(보안관리)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①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 ③ 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업실사 절차, 조사·검증 등에 관한 별도의 기업실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6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내실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개월
2.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적격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영업일
3. 그 외의 경우 7영업일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절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경영

제98조(이해상충방지) 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자기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전담중개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기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선정하거나 자기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율이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의 수수료를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매도하는 행위

제99조(내부통제) 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이 금지된 금융투자업과는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2.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과 기업금융업무 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용기간 중 주식의 매매 회전율
2. 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3.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4. 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매도 상위 10개 종목명

제9절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00조의2(재산상 이익 제공 등)

- ① 회사가 금전·물품·편익 등 이익을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 시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101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02조(임직원 금지사항) ① 임직원은 제101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01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103조(정의)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중요정보”란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04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70조의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제71조의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5조(정의)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운영) 회사는 제105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107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①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통사항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불공정거래 방지활동

제110조(한국거래소 및 협회 운영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활동) 회사는 한국거래소 및 협회의 기준 등에 따라 각각의 운용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한다.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기준은 종전의 사규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기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규에 따른다.

부 칙 <2017.1.17>

이 기준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3>

이 기준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29>

이 기준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3>

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